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과장 정연우 주무관 장남진	042-481-5258 042-481-5107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과장 송금찬 연구사 우관식	063-238-0791 063-238-0798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과장 김종현 주무관 라은교	051-720-2810 051-720-2844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과장 이임균 주무관 이선화	02-961-2561 02-961-2583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과장 이영재 연구원 문기은	043-719-8010 043-719-80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과장 박인숙 연구관 이선화	043-719-4151 043-719-416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팀장 김관주 책임 김찬주	063-919-1310 063-919-1311
	한국임업진흥원 기술지원실	실장 손석규 전임 김광호	02-6393-2641 02-6393-2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장 임응수 주임 이재영	02-3459-2902 02-3459-2856
	 <b>2019년 4월 8일(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 보유건수 : ('14) 4,355 → ('15) 4,976 → ('16) 5,651 → ('17) 6,267 → ('18) 6,873
  - \*\* 특허 활용률(%) : 국유특허 21.8%, 기업 76.1%, 대학·공공연 33.7%('18)
-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내용 >**

-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민간의 절반수준)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
  - \*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
-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 \* 현재의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 현재 1회(3~5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유특허 유관기관 업무협약 주요내용 >**

□ **추진내용**

- (특허청) 발명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특허 관리, 실시기업 판로지원\*
  -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조달기관에 우수발명품을 추천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품’ 선정 시 국유특허 적용제품 우대
- (발명기관\*) 특허 출원 시 시장성 있는 특허 선별, 적정 대리인 비용 지급 등 우수 국유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실시기업 기술전수 등 특허 사업화 지원
  - \*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국유특허를 국가가 승계할 당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을 의미
- (수탁기관\*) 국유특허 통상·전용실시 허락, 특허이전 성과관리
  - \*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국유특허 계약업무를 기술 분야별 전문 기술거래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농업기술 실용화재단(농·축산업), 한국임업진흥원(산림), 한국발명진흥회(수산·의약 등))

우수 국유특허 창출	국유특허 관리	특허이전 및 사업화
특허청 : 발명자 교육 발명기관 : 특허 선별·출원 수탁기관 : 기술수요 조사	특허청 : 국유특허 총괄관리 발명기관 : 고품질 특허 확보 수탁기관 : 특허이전 성과관리	특허청 : 우수발명품 추천 우대 발명기관 : 기술전수 및 사업화 지원 수탁기관 : 통상실시·전용실시 계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장남진 주무관(☎ 042-481-51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0. 24)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9. 4. 9(화) 11:00 ~ 13:00, 대전청사 중회의실(2동 205호)
- 주요 내용
  - 경장 안건의 이행사항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행동력 확보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 (발명기관\*)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보건연구원장(직무대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직무대리) 등
  - \* 국유특허 등록 상위 기관(전체 대비 협약기관 특허건수 비율 : 68.6%, '18)
  - (수탁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한국임업진흥원 총괄이사,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5 (15')	• 티타임 및 환담	특허청장실(4동 14층)
11:15 ~ 11:18 (3')	• 행사장 이동	(4동 14층 → 2동 2층)
11:18 ~ 11:20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산업재산활용과장
11:20 ~ 11:25 (5')	• 특허청장 인사말씀	특허청장
11:25 ~ 11:30 (5')	• 농촌진흥청장 인사말씀	농촌진흥청장
11:30 ~ 11:55 (25')	• 발명기관·수탁기관 인사말씀	7개 기관(직제 순, 각 3분)
11:55 ~ 12:10 (15')	• 특허청·발명기관·수탁기관 MOU	기념촬영 포함

## 붙임 2

## 포괄적 업무협약 내용

### □ 추진내용

- 유관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로, 우수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 주기적 관리 도모
  - (특허청) 발명기관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 특허 관리, 실시기업 판로지원(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 수행
  - (발명기관) 특허 출원 시 시장성 있는 특허 선별, 적절한 특허 대리인 비용 지급,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전수 등 수행
  - (수탁기관) 국유특허 통상·전용실시 허락, 실시기업 관리 등 수행

### < 주요 협약내용 >

- ① 국유특허 실시기업에 대한 사업화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국유특허 창출·관리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국유특허 담당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 국유특허 창출

특허청 : 발명자 교육  
발명기관 : 특허 선별·출원  
수탁기관 : 기술수요 조사

#### 국유특허 관리

특허청 : 국유특허 총괄관리  
발명기관 : 고품질 특허 확보  
수탁기관 : 특허이전 성과관리

#### 특허이전 및 사업화

특허청 : 우수발명품 선정 우대  
발명기관 : 기술전수 및 사업화 지원  
수탁기관 : 통상실시·전용실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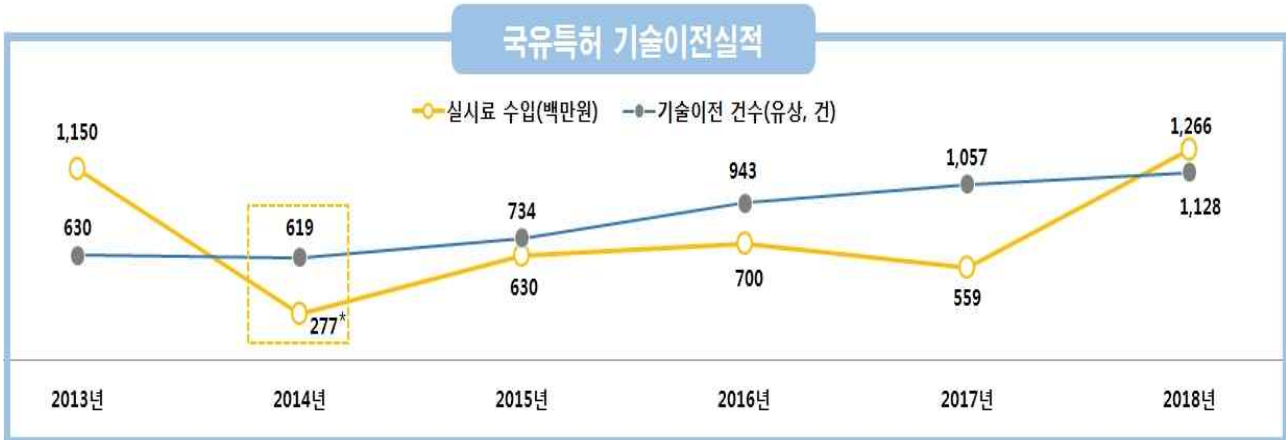
### □ 기대효과

- 국유특허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국유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에 기여

\* 국유특허 활용률(실적·목표) : ('18) 21.8% → ('22) 35%

### 붙임 3

### 국유특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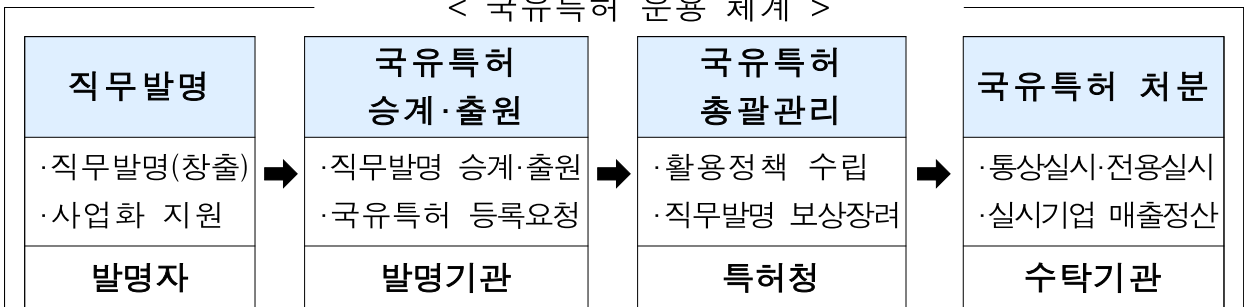
\* 매출실적에 따라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 시행('13.10)으로 수입이 감소하다가 계약만료시기(3년) 도래로 예년 수준을 회복

□ (정의)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특허청이 관리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의미

□ (업무의 관장)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발명자·발명기관·수탁기관은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

\*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유특허 운용 체계 >



■ 발명자 : 직무발명 완성 및 신고, 실시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등 국유특허의 창출·사업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

■ 발명기관 : 공무원 발명시 직무발명여부 판단,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및 특허출원 등 업무 수행

■ 특허청 : 국유특허 총괄업무 수행(직무발명 장려, 국유특허 활용촉진, 국유특허 제도 운영 등)

■ 수탁기관 : 특허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분야별 기술이전 수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축산업), 한국임업진흥원(산림), 한국발명진흥회(수산, 의약 등)에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수행

□ 국유특허 처분의 종류·방법

- (처분의 원칙) 국유특허권은 유상의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 설정도 가능

처분종류		처분방법	기간	조건
통상 실시권	유상	수익계약	3년 이내	국유특허 처분의 기본원칙
	무상	수익계약	3년 이내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증진, 공공의 목적 등으로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경쟁입찰	3년 이내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분가격의 결정) 특허청·수탁기관이 발명기관과 수요기업의 판매 예정수량, 판매단가, 점유율 등에 관한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결정

$$[\text{실시료 예정가격}] = \text{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times \text{제품의 판매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 기본율 : 3% (조건에 따라 2% 이상 4% 이하로 조정 가능)

□ 등록·처분 보상금 등

- (보상금 지급)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처분하고, 특허청이 발명자 및 기관에게 보상금 지급

- (등록보상금) 국가가 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발명자에게 지급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처분보상금) 유상·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에 따라 발명자 및 발명·수탁기관에 보상

\* 발명자 보상 : 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50%

\* 기관 보상 : 발명기관 보상(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차등 지급) 및 수탁기관 보상(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17.5%)

- (사후정산제 도입) 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계약만료 후,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납부('13.10)



## 붙임 4

## 국유특허 주요현황

□ 등록권리 6,873건 중 활용건수는 1,500건으로 활용률은 21.8%

(단위 : 건, %)

구 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활용률 (B/A)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해외 특허	계(A)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해외 특허	계(B)	
2016	4,832	174	502	143	5,651	1,044	27	54	3	1,128	20.0
2017	5,429	164	562	112	6,267	1,263	29	63	4	1,359	21.7
2018	5,954	155	622	142	6,873	1,402	31	64	3	1,500	21.8

\* 활용건수 : 기업과 실시계약이 한 번이라도 체결된 적이 있는 국유특허 건수

□ 국립연구기관\*에 대한 R&D 투자 확대로 연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등

○ 농촌진흥청, 수산물과학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전체의 68%, 활용건수는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 발명기관별 국유특허 보유(활용) 현황('18) >

(단위 : 건)

기관 권리별	농 촌 진 흥 청	국립수산 과 학 원	국립산림 과 학 원	국립보건 연 구 원	식품의약품 안 전 평 가 원	기 타*	계
특 허	3,035(955)	474(131)	397(73)	200(18)	131(9)	1,717(216)	5,954(1,402)
실용신안	132(30)	2	1	-	-	20(1)	155(31)
디 자 인	207(61)	13	17(1)	-	1	384(2)	622(64)
해외특허	78	12(1)	4	9	9(1)	30(1)	142(3)
계	3,452(1,046)	501(132)	419(74)	209(18)	141(10)	2,151(220)	6,873(1,500)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육군 등

□ '18년 국유특허 실시료는 1,266백만원, 보상금은 613백만원 지급

< 국유특허 보상금·실시료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등록 보상금		처분 보상금		기관 보상금		보상금 계		실시료 수입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2016	679	318	267	242	19	53	965	613	700
2017	672	297	121	228	19	85	812	610	559
2018	653	300	189	225	16	88	858	613	1,266